



목 포 시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67호 2020. 11. 23.(월)

고 시

- 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일부개정고시----- 2

공 고

-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----- 5

회람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공보과 ☎ 061-270-8539

목포시 고시 제2020-302호

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일부개정 고시

목포시 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3일

목 포 시 장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계절음식점 영업 제외구역)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역 내 토지는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영업 구역에서 제외한다.

붙임 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1부. 끝.

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(총리령 제1253호 2016. 2.4) 제36조 별표 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 규정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해수욕장 등”이라 함은 해수욕장, 실외 풀장, 관광지역, 유원지 등 다수인이 일시적인 행락 및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.
2. “계절음식점”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계절적이고 일시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신고를 필하여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接客업소를 말한다.
3. “가설 건축물”이라 함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.

제3조(영업구역) 제2조에 따른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

1. 목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설치·관리하는 시설로서 계절적으로 운영하는 해수욕장, 실외 풀장, 유원지 등 운영과 관련하여 목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2. 관광지역은 유달산공원으로 한하며 유달산 일주 도로변, 유달산 후사면 도로변에 접한 지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구역
3. 시에서 주최·주관·후원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지역 축제의 행사장(주무대 또는 주요 시설물)내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구역

제3조의2(계절음식점 영업 제외구역)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역 내 토지는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영업구역에서 제외한다.

제4조(시설기준) 계절음식점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5조(준수사항) 계절음식점의 영업자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「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고시」에 의해 2020년 9월 30일까지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구역 중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은 이 개정 고시에 의해 영업신고가 가능한 구역으로 본다.

목포시 공고 제 2020-1787 호

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

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사 유 : 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등록 및 폐기
2. 등록 및 폐기 예정일 : 2020. 12. 7.(월)
3. 공인명 및 인영

구분	공 인 명	인 영	규격, 서체	비 고
등록	상동장인 (민원사무전용)		2.1cm*2.1cm 푸른전남체	
폐기	상동장인 (민원사무전용)		2.1cm*2.1cm 한글고딕체	

2020년 11월 23일

목 포 시 장